

김해 진영 휴먼빌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으로 - 1순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계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년 10월 16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우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05.31)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완화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함.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확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2012.02.27 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6)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포함)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 경쟁 시 김해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2012.02.27 개정)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 층을 말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및 비속]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거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금액은 플러스 옵션(발코니확장 등) 제외 금액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인지세 포함), 취득세,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분양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당첨자가 분양 계약 시 별도의 발코니 확장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재 내역 및 품목은 신청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함.(이 때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납하여야 함.
(단,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5%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보다 실입주일이 당겨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할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일반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시	2014. 10. 21(화)	10:00~14:00
	당첨자 선정 / 공고	2014. 10. 21(화)	17: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다만, 동일 순위 경쟁 시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중에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며, 2013년 5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5%에서 10% 이내로 변경됨.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당첨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공고가 가능하나, 해당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첨자 선정/공고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심사가 지연되어 당첨자 선정 및 공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함.
- **계약체결일:** 2014.11.03(월) ~ 2014.11.05(수)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 시 당첨이 취소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호 제외)
 - 특별공급 신청 접수는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인이 특별 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대상으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	67.9335	84.9923A	84.9558B	계
일반 특별공급	14	28	7	4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	28	7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14	28	7	4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8	2	14
계	46	92	23	161

2)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49세대 /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단, 해당 기관장의 인정 서류를 받으신 대상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만 제외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49세대 /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2012.04.12)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배점을 부여함.

-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며,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5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4)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49세대/ 건설량의 10%이내]

구분	내용
공급 대상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 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5명 이하의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말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고시) ※ - 단독별이: 3인이하 - 4,606,216원이하, 4인 - 5,102,802원이하, 5인 이상 - 5,357,446원 이하 - 맞벌이: 3인이하 - 5,527,459원이하, 4인 - 6,123,362원이하, 5인 이상 - 6,428,935원 이하
입주자 저축 (청약자격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청약 순위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순위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동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3. 미성년인 자녀수(태아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한 자녀 ②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됨.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공급계약)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320호]에 따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14세대/ 건설량의 3%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기간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준용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6)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2you.com/)에서 발급]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은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 시) -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카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사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3세대 이상 세대주 구성 청약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한부모가족)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에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 입증서류도 제출)
<p>노부모부양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p>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건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 10. 16)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 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순위 경쟁 시 김해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청약가점제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 점	84점 만점 기준					
	본인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 ④ 감점 점수(아래 “감점 산정기준” 참고)					

④ 감점 산정기준

감점 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정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을 적용함.
- 감점점수가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3)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4)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5)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② (현재: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은 적용 제외) 시 적용함.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한다.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주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순위별 청약자격 및 접수일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민영주택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순위	공 통	- 청약자는 가정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신청 시 모두 가정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 시 주택소유에 따라 감점이 적용됨.
		2순위	- 대상 없음.	
		3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이 적용됨)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2)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울산광역시 거주자	부산광역시 거주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0	250	300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부산광역시 600만원, 울산광역시 400만원, 경상남도 및 김해시 3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3) 청약 접수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2014.10.21(화)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4:00	- 일시 : 2014.10.29(수)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1순위	2014.10.22(수)	- 장소: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접수시간 : 08:00 ~ 17:30	
	3순위	2014.10.23(목)	- 장소: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ap2you.com) - 접수시간(접수완료시간 기준) : 08:00 ~ 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접수 중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4)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 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 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태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가정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분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첨 시 1층을 우선 배정하므로 주택공급신청서 해당란에 1층 우선배정신청 대상자 여부 및 우선 신청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1층이 없는 경우 최저 층을 우선배정대상으로 할 수 있음)

3.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방문 청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 입주자저축 통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 : 동일세대 구성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 다음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 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 접수

구 분	청약신청금	비 고
전 주택형	5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5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4. 10. 30)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 시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	-
은행창구 접수 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

- 가) 본인,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청약 당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나) 제3자 대리 환불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생략), 제 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당첨자를 추천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천함) 하며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수 배정함.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거 공급함.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신청 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다른 청약자보다 1층(1층이 없는 경우 최지층)을 우선 배정함. 1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천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천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한 청약자의 계약체결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동·호수 배정 추천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2014.10.29(수) ~ 2014.11.07(금) (10일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형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자사실조회 ⇒ 주택형별 조회
	전화 ARS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서비스코드 : 9 → 1 → 3)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 1369(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 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 일시	2014.10.29(수) (단,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복 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모두 무효 처리되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2014년 11월 3일(월) ~ 2014년 11월 5일(수) [3일간]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301-0154-1169-11	대한주택보증(주)피에프금융1센터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인 계약체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는 전산 관리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안내(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6년 10월경(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문고, 경비실 등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선택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문	각 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짚, 창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세대방화문, 분합창호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시멘트몰탈(난방배관은 해당부위만 시공)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타일, 경량칸막이 등)	석고보드(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 건축공사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정틀(석고보드 포함),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견출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천정재(천정틀 포함), 욕실철크, 욕실바닥 및 벽타일	시멘트벽돌, 전기, 설비 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전제품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 주방배기덕트, 가스배관 세대인입
일반가구	신발장, 반침가구(불박이장 등)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전스위치, 콘센트, 소켓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천원, VAT포함)

주택형 ㎡	67.9335	84.9923A	84.9558B	비 고
마이너스 옵션금액	19,165,680	23,900,860	23,859,73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신청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 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기밀등급이 2등급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적용	부속동(휘트니스센터,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근생시설) 화장실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싱크수전)

▣ 추가 선택품목 계약(발코니확장)

-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2008.10.29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차감한 가격임. 또한 발코니 확장은 각 실별·위치별 선택이 불가하며, 발코니 샷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
- 아래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67.9335	84.9923A	84.9558B	비 고
발코니 확장공사비	8,800,000	9,900,000	9,900,000	

- 주택형별로 각 세대별 확장부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각 주택형별로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발코니에 대한 확장공사가 서비스로 일괄시공(발코니 창호는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장타입이 축소 조정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 이후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아니함.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연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수 있고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세대 내에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금액	NH농협은행	301-0154-1170-21	대한주택보증(주) 피에프금융1센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구분	건축	전기	통신/소방	비고
회사명	(주)에이플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주)일신전기감리	세종종합기술(주)	V.A.T 별도
감리금액(원)	1,049,290,000	267,744,510	135,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원가공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0,470,393,867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821,140,583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951,299,787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22,242,834,237	
공사비	토목	4,012,000,000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38,190,000,000	공동가설공사, 가시시설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5,558,000,00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5,389,000,000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7,621,000,000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60,770,000,000	
간접비	설계비	545,348,722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1,597,237,96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27,593,918,056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29,736,804,738	
그 밖의 비용		4,379,661,025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117,129,000,000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내용 및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제외대상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내용

(단위: 원)

보증기간	구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분양주택	81,990,300,000	제 01212014-101-0004800 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약관 주요부문요약입니다.

■ 보증사과의 내용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홀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을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공급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입주자모집실태 조사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은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공급간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저차 등은 실물 확인 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일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 품목, 전σι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 전σι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안임.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인접해 [분산준공업지구 및 김해주호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환경권, 공해, 소음, 악취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현장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람.
-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일에 맞추어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분리쓰레기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주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당사 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동표시, 색채 등과 관련된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공사
회사명	일신건영(주)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주택 1990-0007

■ 견본주택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1번지

■ 사이버견본주택 : 김해 진영 휴먼빌 홈페이지 www.ilshinc.com

■ 분양문의: ☎ 1588-109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